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서식·제3호서식)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0. 00. ~ 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의 분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

작성방법

1.

데이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분야	[] 데이터거래사업자 []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데이터거래사업자 ·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설립년월일	
④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업 형태	[] 개인 [] 법인 [] 상장 [] 코스닥등록 [] 비상장(비등록)		
⑥ 제공서비스	명칭	데이터 사업 내용	
⑦ 데이터거래사	[] 고용 명수		
⑧ 양도회사 (양수도 신고 시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⑨ 담당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작성 방법

- (*)표란은 접수처 담당자가 적는 란입니다.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하시고, 합병신고하실 경우는 인수하는 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합병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⑧ 양수도 신고 시 적으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⑨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신고번호:

발급번호: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신고일자:
5. 사업분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참고사항 >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인증 대상명		
	인증 대상분야		
	상세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인증 대상 관련 자료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